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대회참가 및 개최 보조금 지급 규정

2016년 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대회참가 및 개최 보조금(격려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 가맹경기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분) 대회참가 및 개최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국대회 참가보조금 : 중앙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로서 전국 10개 시·도 이상 참가하며 경기방식이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거나, 선수단 구성이 세종특별자치시 대표의 성격을 갖는 대회에 참가 시 지원하는 보조금. 단, 동계종목인 경우 전국 5개 시·도 이상 참가하는 대회에 참가 시 지원하는 보조금
2. 전국대회 개최보조금 : 중앙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로서 본회 가맹 경기단체의 주관 또는 후원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로서 전국체전 정식종목에 한하여 지원하고, 전국 10개 시·도 이상 참가하며 세종특별자치시내에 소재하는 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 시 지원하는 보조금(단, 경기장 관내 미시설인 경우는 인근 관외 시설 사용)
3. 시장기(배)/협회장기(배)대회 개최 보조금 : 본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로서 전국(소년)체전 정식 출전종목에 한하여 대회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보조금
4. 국제대회 참가격려금 :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우리시 소속선수가 참가 시 지원하는 격려금

5. 본회 가맹경기단체 주관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보조금 : 본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교류대회 포함)로 우리시에서 개최 또는 외국에 참가시 지원하는 보조금

제4조(신청서류) 대회참가.개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본회 가맹경기단체의 대회참가 또는 개최보조금지급 요청서 1부
2. 대회 주최기관의 공문 1부
3. 참가 시.도 현황 1부
4. 세종 선수단 참가신청서 1부
5. 대회요강 1부

제5조(가맹경기단체의 의무) 본회에서 대회참가 및 개최보조금을 지원받은 경기단체는 대회종료 후 경기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를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본회 가맹경기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본회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제7조(지원기준) 대회참가.개최 보조금의 세부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대회 참가 보조금
 - 가. 지급횟수는 연5회 이내로 한다.
 - 나. 대회당 출전하는 선수 및 지도자 1인당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처리기준 및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 전국대회 및 시장기(배)/협회장기(배)대회 개최 보조금

가. 지급횟수는 각 대회별 1회(최대 3회)로 한다.

나. 대회참가 총인원(선수, 지도자 포함) 및 대회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세부사항은 본회에서 심사하여 본 규정에 의거 따로 정한다.

다. 대회 개최 신청시 자부담(수익금 포함)율은 지원 예산 금액의 10%이상으로 한다.(단, 중앙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대회 개최시에는 지원금액의 1/3이상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3. 국제대회 참가 격려금

가. 대회참가 선수 1인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 사업계획 및 기본계획에 이 규정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정산, 보조금 회수 등 일반적인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